#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3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강유정·강선우·박희승

정준호・조 국・서영교

위성곤 · 조계원 · 문대림

이기헌 · 김영배 · 김한규

한병도 의원(13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 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감당해야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 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 주요내용

- 1.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함(안 제8조, 제9조제 1항제5호).
- 2. 상임위원회와 소의원회의 심리·의결 안건 중 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 3.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중개토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 · 의결안건 제14조(의사의 공개) (생 략)

<신 설>

<신 설>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 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 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을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